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청렴^한 세상

공정한 사회 · 청렴한 세상

I. 추진 배경	1
II. 주요 내용	3
III. 공익신고 기관 공통 준수사항	17
IV. 공공기관 준수사항	23
V. 민간기업 준수사항	29
(붙임) 1.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32
2. FAQ	48
3. 신고자 보호 위험도 자가진단	59
별첨 1	61
• 공익신고자 보호법	61
• 별표	85
별첨 2	95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96



청렴^한 세상

공정한 사회 · 청렴한 세상

I

추진 배경

I

추진 배경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회·제도적 토양 조성

-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건전한 공익신고 활성화 도모
 - ※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의해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는 미비

공익신고자 불이익 사례

- 역무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 ○○공사 역무원 5명이 열차탈선 위험을 언론 제보
 - ○○공사는 제보자를 색출하여 3명을 파면하고, 2명을 감봉·전출조치
 - 파면된 3명 중 2명은 법원의 파면처분 취소판결로 복직하였으나, 감봉·전출 조치된 역무원 중 1명은 정신적 고통 등으로 자살
- 주한미군 군무원의 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제보
 - 한국계 미국인인 현직 주한미군 군무원의 제보로 용산 주둔 미8군에서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으로 방류한 사실이 공개됨
 - 미8군사령관은 독극물 방류를 시인하고 공식 사과를 하였으나 제보자에 대해 재계약 거부
- 중국산 가짜참기름 제보
 - 유○○씨는 중국산 참기름을 한국으로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속이거나 식용유를 섞어 유통하는 업체를 식약청에 제보
 - 재판과정에서 업체 관계자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입수하여 무고죄 및 신용훼손 혐의로 고발, 출국금지 조치됨

▣ 민간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를 통한 공익침해행위 사전 예방

- 공익침해행위의 은밀성·전문성으로 인한 행정부담 절감 및 국가 브랜드가치 제고
- '08년 국정과제('건전한 내부고발자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 구축') 선정 이후 본격적 입법 추진 끝에 '11.3.29. 제정, '11.9.30.부터 시행

II

주요 내용

II

주요 내용



1. 공익신고

▣ 신고의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자로 한정하지 않음

▣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 ※ 붙임 1.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및 예시 참조

▣ 신고 방법 : 신고 기관 및 신고 요건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다음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공익신고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①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②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
⇒ 기명신고 문화 정착을 통한 책임감 있는 공익신고 문화 조성

2. 공익신고 처리

가. 조사기관의 처리

▣ 조사의 착수

- 공익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에 착수

조사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법 제10조제2항)

- 공익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끝난 경우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타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경우

▣ 조사 결과의 통보

-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 ※ ①형사·행정처분 등 신고사항 처리결과 및 경위·이유 ②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방향 ③보상·구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④공익신고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요지 등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보
- 조사 결과 통보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신고내용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상황을 권익위에 통보

나. 대표자 및 국회의원 등의 공익신고 처리

▣ 신고사항의 확인(대표자 등)

-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등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제거·예방방안을 마련·시행
- 조치방안의 마련·시행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 조사기관 등에 송부(대표자 및 국회의원 등)

- 공익신고를 받은 국회의원과 공공단체는 이를 조사기관·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송부하여야 함
-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조사기관·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신고사항 송부할 수 있음
 - ※ 법 제10조제2항의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음

3. 공익신고자 보호

가. 기본사항

▣ 협조자 보호

- 비밀보장 등 모든 보호에 있어서 협조자는 공익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 협조자 : ①공익신고 ②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③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제9조~제12조) 준용 내용

- 조서 및 기타 서류 작성 시 인적사항 생략
- 신분관리카드의 열람 배제
- 증인신문 시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 촬영
- 피고인의 법원 퇴정, 공개법정외 신문 등 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 공판기일의 지정 등 소송 진행의 협의

나. 비밀보장

▣ 비밀보장 의무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민권익위원회는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해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

-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의무화
 -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신변보호

▣ 신변보호 조치 요구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 신변보호 조치

- 경찰관서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 결정
 - ※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신변보호조치 해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제7조)의 신변안전조치

-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라. 책임감면 등

▣ 형의 감경·면제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 징계의 감면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감면 요구 가능
 - ※ 징계의 감면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규정된 공익신고의 금지·제한 규정은 무효로 됨

▣ 손해배상 청구 금지

-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마.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 불이익조치의 금지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 ※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이익의 종류(법 제2조제6호)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차별지급
- 교육·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보안정보·비밀 정보 사용정지 및 취업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 주의대상자명단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 공익신고의 방해 및 취소강요 금지

-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음
-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전출·전입·파견근무 등 인사조치 요구 시 우선 고려

☑️ 유리한 법률 우선의 원칙

-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

바.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 보호조치의 신청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 가능
 - ※ 신청기간 : 불이익조치 발생일(계속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 불가 ⇨ 각하 사유에 해당

▣ 불이익 추정 원칙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

불이익조치 추정사유(법 제23조)

-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 공익신고등이 있을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보호조치 신청사건 조사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신청인, 불이익조치자, 참고인,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에 자료 제출·출석·진술서 제출 등을 요구
 - ※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화해의 권고

- 보호조치 신청 후 결정·권고 전까지 직권·관계 당사자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손해 배상 등에 대해 화해 가능
 - ※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 보호조치 결정

- 신분상·근무조건상 불이익이 인정될 경우 불이익조치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보호조치 결정의 종류(법 제20조)

- 원상회복
-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 포함)의 지급
-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 보호조치 결정의 확정

-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호조치 결정이 확정됨(행정심판 청구 금지)
 - ※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호조치 권고

-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 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의 금지 신청

-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인정될 경우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사전 권고

※ 조사 절차 등은 보호조치 신청 관련 규정을 준용

▣ 조치결과의 통보

-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관련 요구나 권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사. 협조 등의 요청

▣ 요청 사유

- 접수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 조사·처리 및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의료기관, 그 밖에 관련 단체 등에 협조·원조 요청 가능

구체적 협조·원조 사항(시행령 제20조)

- 자료·서류 등의 제출·설명
- 출석 및 의견 진술
- 소속 직원의 파견·공동조사 및 자문
- 공익신고자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 법률상담·자문 및 소송대리 등 피해회복·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4. 공익신고자 보상·구조

가. 보상금 지급

▣ 신청 요건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보상금 신청 요건이 되는 수입 회복·증대 사유(법 제26조)

- 벌칙·통고처분
- 몰수·추징금 부과
-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 국세·지방세 부과
- 부담금·가산금 부과
-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신청 시기

-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또는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지급 금액

- 최저 10만원 ~ 최고 10억원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미지급

▣ 보상 절차

- 신청인, 참고인, 관계기관 등에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을 요구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급 결정

▣ 보상금 감액·미지급 사유

- 공익침해행위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는 보상금 미지급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의무자 또는 공익신고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 또는 미지급

▣ 보상금 상환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증대로 인한 보상금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권의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상금 상당액을 국고로 상환
※ 미상환 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나. 구조금 지급

▣ 신청 요건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신청

구조금 신청 요건이 되는 피해·비용지출 사유(법 제27조)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지급 절차

- 신청인·이해관계인 조사, 행정기관·관련 단체에 필요 사항 조회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결정

▣ 구조금 대위 청구

- 국가는 공익신고자등에게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피해·비용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다. 중복지급의 금지 등

▣ 중복지급의 금지

- 보상금·구조금은 타 법령에 따른 중복청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중복수령은 금지
- 이 법에 따라 보상금·구조금을 받은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타 법령에 의한 보상금·구조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받은 보상금·구조금을 공제
 - ※ 타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구조금 등을 받은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함

▣ 보상금·구조금의 환수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 동일한 원인으로 중복 지급된 경우
-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등
 - ※ 미납부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III

공익신고 기관 공동 준수사항

III

공익신고 기관 공통 준수사항



1. 신고 접수

☑ 공익침해행위 여부의 판단

- 접수된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 건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일차적으로 판단

☑ 신고요건 준수 여부 확인

-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증거** 등을 첨부했는지 확인하고 미흡 시 **보완 요청**
 - ※ 홈페이지, 우편, FAX 등의 문서로 신고해야 하며, 전화는 상담만 가능
- **익명신고는 접수하지 않도록 하고, 익명신고자의 신원을 밝히려는 시도는 금지**

신고서 예시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60일	
신고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직 업				
피신고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직 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 반드시 특정한 양식에 따른 신고서가 아니더라도 공익신고로 접수 가능

▣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 신고자가 조사·수사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확인·적시
⇒ 신분공개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또는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의 공개·보도 금지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예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p>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p> <p>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고발 또는 송치하게 됩니다. ⇒ [] 동의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는 경우에는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해야 합니다.</p>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2. 신고자 보호

▣ 협조자 보호

- 협조자도 신고자에 준하여 신분비밀 보장 등 보호에 주의

▣ 인적사항 등의 블라인드 처리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사건 담당자와 부서장만 인지하도록 함
- 신고자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명, 지역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보고 등 처리

▣ 사건 접근 권한의 일원화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사건 접근 권한은 사건 담당자와 부서장만 보유
 - ※ 전산담당자, 고위급 공무원·임원의 접근 권한 공유 금지
- 온라인 시스템의 경우 비밀번호는 본인만 숙지하도록 하며, 사건 담당자와 부서장 외 사건열람 불가 여부를 항시 확인
- 오프라인의 경우 관련 기록이 유출되지 않도록 문서고에 사건을 따로 보관하고 보안 유지

▣ 이송·송부·자료제출 사건의 신고자 비밀 보호

- FAX,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타 기관에 사건을 이송·송부하는 경우 등에는 인적사항 비공개 등을 재확인

▣ 불이익 금지 등

-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 공익신고의 방해 또는 신고 취소의 강요 금지

▣ 징계의 감면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와 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징계의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를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의 면제

- 공익신고나 협조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미위반 간주
 - ※ 예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을 파괴·손상하는 행위를 신고한 응급구조사는 제40조에 따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공개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공익신고 금지·제한 규정의 무효

- 단체협약·고용계약·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간주
- 따라서, 해당 규정의 삭제 등 개정이 바람직

3. 보상·구조금

▣ 중복청구 및 지급 여부 확인

-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타 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 타 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미 받은 보상금을 공제하고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
 - ※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확인 요청. 이 경우에도 신고자 인적사항 비공개에 주의
 - ※ 사내 규정 등에 의한 중복지급은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구조금 지급 요건 확인 및 중복지급 금지를 위하여 출석·진술·자료제출 및 필요사항 조회 등을 요구

▣ 보상금 지급 과정의 신고자 보호

- 지급 결정 등 모든 과정에서 인적사항 등 블라인드 처리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13년 이후)

-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 정착 이후 보상·구조금 중복지급 금지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예정
 - ※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 정보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이용을 위한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보 제공 요청 가능

4. 기타

▣ 세부추진시책의 수립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및 제도 교육·홍보 관련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추진시책을 수립('12년 상반기 권고 예정)

▣ 타 기관에 대한 협조·원조 요청

- 신고내용의 조사·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의료기관 등에 협조·원조 요청 가능
 - ※ 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 출석 및 의견 진술 요청, 자문 요청 등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지원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컨설팅, 교육·홍보자료 배부 등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

▣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 제출

IV

공공기관 준수사항

IV

공공기관 준수사항



신고 조사과정의 준수사항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신고 송부과정의 준수사항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에만 해당

1. 신고 조사(행정·감독기관의 경우)

▣ 타 법령에 따른 조사 여부 확인

- 타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사항인지 확인
- 타 법령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음 (법 제10조제2항)

▣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개 여부 확인

-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음(법 제10조제2항)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및 동거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준용
- 신원관리카드를 이용하여 조서 기타 서류에서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 신원관리카드의 관리 : 부서장(조사기관), 검사(수사기관)

신원관리카드 및 조서 등 작성 예시

공익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사건번호	2011 공익신고 제1호		
법원사건번호			
피신고자 성명	박 침 해	주임검사	
공익신고자등 인적사항	성 명	김 공 익	가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710930 - 1234567	직업 (주)환경침해 과장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010-123-4567
	주 소		
	본인서명	본명 김 공 익	신분 공익신고자
가명 홍 길 동			
작성원인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 사법경찰관의 직권, 검사의 직권, 판사의 작성요청		
최초 작성일자	2011. 9. 30.	최초 작성자 성명	이 조 사 (서명 또는 날인)
신원관리카드 접수일자	2011. 9. 30.	사건종국 결정일자	



확 인 조 서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기재 생략			
주 소	기재 생략					
직업(직장명)	기재 생략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기재 생략	직장	기재 생략	자택	기재 생략
위의 사람은 “수질오염물질 불법방류 등 의혹” 신고사항(접수번호 2011 공익신고 제1호)의 신고인으로서 2011. 9. 30. 14:00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조사실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 공익신고자에 대한 통보

-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여 조사하지 않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통보
- 조사 종료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
- 관할에 속하지 않는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경우 이를 바로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사건

- 이첩받은 신고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 없이 타 기관에 이첩할 수 없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신고내용의 처리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처리 상황을 통보
- 이첩받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 ※ 행정처분 등 처리결과,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통보

2. 신고 송부(공공단체의 경우)

▣ 공익신고 송부

- 공공단체는 공익신고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송부 하여야 함
 - ※ 단,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신고를 보내지 않을 수 있음

▣ 공익신고자 통지

- 공공단체는 송부 등 조치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
 - ※ 송부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지

3. 기타

▣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 공직자가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해당 공익침해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②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의장 및 그 직원이 이에 해당



청렴^한 세상

공정한 사회 · 청렴한 세상

V

민간기업 준수사항



V

민간기업 준수사항



1. 신고 처리

▣ 조치방안 마련

- 공익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을 확인 후 해당 공익침해행위의 제거·예방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시행
- 조치방안 마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 조치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

▣ 공익신고 송부

- ①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②공익침해행위의 제거·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해당 공익침해행위의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송부
 - ※ 공익신고자가 요구하더라도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등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러한 사실과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

2. 기타

▣ 핫라인 개설

- 감사담당 부서 등과의 핫라인(전화·홈페이지)을 개설하여 공익신고를 직접 상담·접수할 수 있도록 함
 - ※ 단, 신고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하나 신고 접수는 홈페이지, 우편, 이메일, FAX 등을 통해 감사담당 부서가 직접 접수하도록 주의
- 핫라인의 기본 전제는 철저한 비밀보장이므로 임직원과의 연락체계에서 인적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내부규정 정비 및 직장 교육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규정 및 매뉴얼을 정비하여 공익신고의 자율처리 시스템을 활성화
- 신고제도 및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에 대한 직장교육을 주기적(예 : 반기 1회)으로 실시하여 공익신고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사전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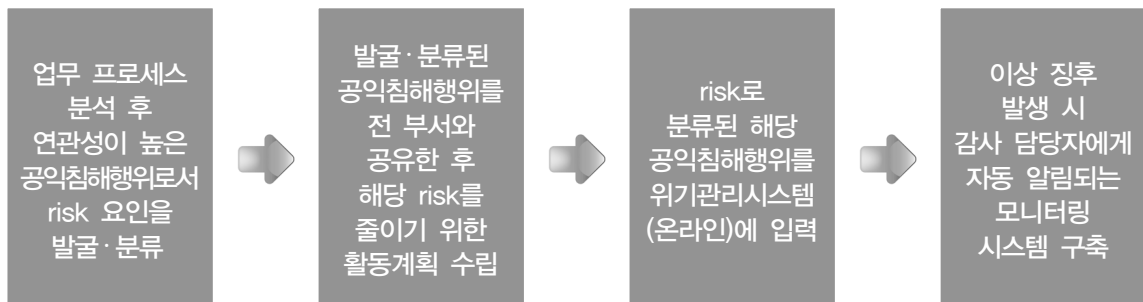
▣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

- 공익신고로 인해 기업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수입이 증대했을 경우, 공익신고자에 대해 승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보상체계 구축 권장
-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증대를 가져왔을 경우,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를 안내

▣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기업이 자주 당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요인들을 위험 요소로 추가 설정하고 상시 모니터링
-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위험(risk) 요소로 인지하여 상시적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자율적으로 예방

위기관리시스템 예시



붙임 1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중단 행위 등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입 등
3	가축전염병예방법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동물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미허가 반입 등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위험병원체를 허가 없이 반입하는 행위 등
5	개항질서법	위험물운송선박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장소 외에 정박하거나 정류하는 행위, 위험물취급자의 안전조치 위반 등
6	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 실시결과를 거짓으로 판명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행위 등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유독유해물질 및 병원미생물 오염, 썩거나 상한 것 등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
8	건설기계관리법	부정한 건설기계 검사대행, 구조변경검사 미실시, 미등록 건설기계 사용·운행 등
9	건설기술관리법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책임감리 등을 수행함으로써 교량·터널·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협하게 하거나 시설물 구조상 주요부분 중대 손괴를 야기하는 행위 등
10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자 또는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 등
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행위 등
12	건축사법	건축사가 아닌 자가 무자격으로 설계 및 시공감리를 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대여하여 설계 및 시공감리를 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3	검역법	운송수단의 장, 사람,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행위, 격리 병동의 화물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 등
14	경비업법	특수경비원이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등
15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값 조작 목적의 계량기 변조 및 변조계량기의 양도·대여, 정밀도 등의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 주유기 조작, 관광지 주변 상거래용 저울의 조작 등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시설 손괴 및 개조 또는 가스안전시설 기준 위반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행위 등
17	골재채취법	금지구역내 무허가 골재채취 등
18	공연법	공연시설에 대한 부정한 안전진단, 안전검사 미 실시 등
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리게 하는 행위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
2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개업자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부동산 중개와 같은 명칭들을 사용하는 행위, 수수료 및 실비를 초과한 금품 수수 및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정보의 제공 등
21	관광진흥법	관광시설 안전성 검사 미 실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
22	광산보안법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낙반(落盤), 붕괴, 용수(湧水), 가스의 누출, 가스·탄진(炭塵)의 폭발, 자연발화, 화재의 방지 및 통기(通氣)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 미 실시 등
2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불합격된 오염수질정화시설의 사용 등
24	교통안전법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 등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하여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26	국가기술자격법	의료인 자격의 부정취득 등
27	국민건강증진법	담배갑 포장지 앞·뒷면 및 광고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와 발암성 물질을 각각 표기하지 않는 행위 등
2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대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외 임산물을 취득하는 행위 등
29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
30	궤도운송법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준공검사나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의 수변구역에서 무허가 폐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3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건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미실시,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미실시 등
3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의 수변구역에서 무허가 폐수배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34	낙시어선업법	어선의 안전점검 미실시, 낙시어선업자가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행위 등
35	내수면어업법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및 보호기간 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등
36	농산물품질관리법	거짓 등의 방법으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거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고 허위 표시를 하는 행위, 거짓 등의 방법으로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등록·표시하거나 지리적 표시품, 표준규격품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허위 표시를 하는 행위 등
37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허가 없이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을 개설하거나, 허가 없이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 등
3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 제공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혼합·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39	농약관리법	미등록 농약을 판매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제한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원제를 수출입하는 행위, 판매 농약의 용기나 포장에 농약 등의 명칭, 유효성분별 함유량, 적용 대상 병해충명, 약효 보증기간,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
40	농어촌도로정비법	정당한 사유 없이 농어촌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도로의 부속물을 옮기거나 파손하는 행위 등
41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거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42	농지법	건축물의 건축 등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 등
4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령으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위반 또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행위 등
4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 등을 설치·유지하지 않거나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행위 등
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한 것을 위반하는 행위 등
46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행위 등
4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부업 광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의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한 대부중개 및 수수료 수수 등
4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의 저수 방류로 하류에 현저한 변화가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댐수탁관리자의 임·직원이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애를 야기하는 행위 등
49	도로교통법	신호기 무단 조작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철거·이전·손괴 등
50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미 실시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51	도시철도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도시철도차량의 운행, 도시철도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등
5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생태계보전 지역에서의 포획, 채취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등
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품 가격 및 용역 대가의 부당 결정·유지·변경,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부당 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부당 방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부당 방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 및 소비자의 이익 침해 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등
5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등
55	말산업 육성법	승마시설의 시설 및 안전 기준 미준수 등
56	먹는물관리법	먹는샘물 등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거나 무허가 먹는 샘물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5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 등 보전지역에서의 포획, 채취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등
58	문화재보호법	천연기념물 지정 또는 보호구역 내에서 동물 등을 포획·반출하는 행위 등
5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 정부가 지정한 최고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등
6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 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등
6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등
6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행위 등
6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허가 없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64	보험업법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할 수 있는 불명확 또는 불공정한 광고의 전달, 약관, 설명서 및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고시 등 필수항목의 광고 미표시,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이나 보험금액 지급 약속 등 특별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
6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
66	비료관리법	등록 없이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행위, 신고 없이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판매하는 행위 등
67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미허가 사격장의 설치, 사격장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68	사료관리법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사료의 허위 또는 과장 표시, 표시 없는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
69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내 허가 받지 아니한 벌채 또는 임산물 채취 행위 등
7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채종림에서의 벌채 행위 등
71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또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72	산업표준화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표준제품인증을 받거나 부정한 산업표준제품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는 행위 등
73	산지관리법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는 행위,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하는 행위 등
74	상호저축은행법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蠶食)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75	새마을금고법	자금을 금고나 연합회의 사업목적 외에 사용·대출하거나 금고나 연합회의 재산을 투기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제한을 위반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76	석면안전관리법	미허가 석면함유제품 제조, 수입 및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에 불복
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과 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 등을 공급판매, 저장, 운송, 보관하는 행위,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
78	선박안전법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시킨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행위, 선박의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
7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이동하는 행위 등
80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소를 수입·수출, 양도·양수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행위, 도축업자가 소를 도축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쇠고기를 포장처리할 때 신고하지 않는 행위, 개체식별번호 표시의 위변조 및 훼손 또는 거짓 표시, 수입유통식별번호의 거짓 신청 및 표시 또는 위변조 등
81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등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등
8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행위 등
83	소비자기본법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 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 안전조치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표시나 포장 등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잘못 선택·사용하지 않도록 국가가 정한 표시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
84	소하천정비법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
85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
86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에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된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8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 또는 확산의 예방·방지를 위한 수산생물용 의약품 투약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행위 등
88	수산물품질관리법	유전자 변형 수산물의 거짓 표시 및 표시의 손상 변경을 통한 혼동 유발, 유전자 변형 수산물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는 행위, 지정해역 및 양식어장시설에서의 기름 배출 행위 등
89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등
90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등
91	수상레저안전법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수상레저 시설의 안전검사 미실시,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등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9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석유제품 및 원유, 유독물,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등
93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습지를 면허 없이 매립하는 행위,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안에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또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 등
9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행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행위, 승강기·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승강기·승강기부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 부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등
9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명의 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도로, 철도, 교량, 댐, 항만,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는 행위,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96	식물방역법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등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식물을 수입하는 행위 등
97	식품산업진흥법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인증을 받거나 인증받지 않음에도 인증표시 및 광고를 하거나, 인증받지 않은 식품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98	식품안전기본법	유해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해 우려가 제기되어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생산·판매 등이 금지된 식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
99	식품위생법	식품 및 식품첨가물,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규격에 위반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부정식품이나 병든 동물고기,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수입·진열·운반하는 행위 등
10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가스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 및 가스시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101	야생동·식물보호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포획하는 행위 등
102	약사법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등
103	양곡관리법	양곡의 품질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행위 등
10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받거나 놀이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10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사행심 조장 및 성적 호기심 유발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방송 등을 이용하여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기는 물건을 무료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 등
106	어장관리법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어장환경 기준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고 있거나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 등
107	어촌·어항법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거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또는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0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인증 없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는 행위,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검사대상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를 받지 않는 행위 등
109	여신전문금융업법	위조된 신용카드를 판매·사용하는 행위,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등
11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111	염관리법	부산물염(산업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소금 등을 의미)을 식용 목적으로 가공·판매하는 행위, 허가 없는 염전의 개발, 품질검사에 불합격된 염을 판매하는 행위 등
11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의 수변구역에서 무허가 폐수배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113	영유아보육법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
11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물질을 허가 없이 제조하는 행위 등
115	원자력법	원자로를 파괴하는 행위, 방사성 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핵연료주기시설·방사선 발생 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등
11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정당한 권한 없이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협하게 하거나 재산·환경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이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11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 및 광고,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금융업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1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및 생산하는 행위 등
11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유해성 심사 없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행위,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 및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영업하는 행위 등
1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 방해, 의료시설 파괴 및 응급의료 거부 행위 등
121	의료기기법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 행위 등
12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하는 행위 등
123	의료법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 면허조건 불이행 행위, 의료업 종사자가 아닌 자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 작성·교부 행위, 안마사 자격 없는 자의 영리목적 안마행위 등
124	인삼산업법	연근의 허위표시 및 판매, 미검사품 및 불합격품의 판매, 제조기준 위반, 잔류성농약의 사용 등
12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특별관리 임산물의 유통·판매·통관,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거나 거짓 통보하는 행위 등
126	자격기본법	금지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의 교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는 행위,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
127	자연공원법	지정장소 외 야영행위, 오물 및 폐기물 등 투기 행위 등
128	자연재해대책법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댐,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가 피해 경감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등
129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移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거나 이를 위하여 화약류·땃·울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注入)하는 행위,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
13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취급제한 잔류성 유기 오염물 사용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
13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감염된 장기의 적출·이식, 반대급부 목적의 장기거래 알선 등
13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수지·댐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저수지·댐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33	전기공사업법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일으키게 하여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한 시공으로 인하여 주요 전력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는 행위 등
134	전기사업법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하는 행위, 전기시설의 부정한 안전관리업무 대행 등
13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는 행위,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 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는 행위 등
13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폐차업자가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보관하지 않는 행위, 파쇄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를 부수어 금속류를 회수한 후 발생하는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지 않는 행위 등
137	전력기술관리법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송전설비·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 등
13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거래조건의 허위정보 제공, 허위자료 제출을 통한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체결, 수신 의사가 없는 자에 대한 구매권유 광고 송신 등
13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거짓·부정한 방법의 품질 인증, 품질 인증을 받지 못한 술의 인증 표시 위반, 인증을 받지 못한 술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못한 술의 허위 광고 등
14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전력, 교통, 금융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하는 행위 등
1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산림훼손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등
142	제품안전기본법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 제품에 결함에 따른 수거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
143	종자산업법	품종보호를 받지 않거나 품종보호출원증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허위 표시 등을 하거나 영업용 광고, 거래서류, 표찰 등에 허위 표시하는 행위, 거짓보증서를 발급하거나 보증받지 않는 작물을 판매·보급하는 행위,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를 수입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44	지진재해대책법	도시가스공급시설 등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145	지하수법	지하수 보전구역 내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146	직업안정법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밖의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하는 행위, 성매매나 그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하는 행위, 고시금액 외 금품이나 법령을 위반한 선급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147	집단에너지사업법	공급시설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
148	철도안전법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손괴하여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철도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
149	청소년보호법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의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 등
150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
15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폐쇄·차단하는 등 복합건축물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
152	초지법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분묘의 설치, 토석의 채취 및 반출 행위 등
153	축산물위생관리법	미허가 작업장에서의 가축을 도살하는 행위,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그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수입·판매하는 행위, 유해 발생 축산물을 폐기하지 않는 행위 등
15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등
155	친환경농업육성법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행위,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56	토양환경보전법	토양보전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등
15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행위 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 등 폐기물 처리의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
15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사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을 하게 하는 행위 등
15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거짓 등의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는 행위,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공산품을 제조·수입하는 행위,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이 금지 되었음에도 안전인증표시 또는 유사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거짓 등의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지정을 받는 행위, 안전인증기관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하는 행위 등
16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서면 발급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
161	하수도법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등
162	하천법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허가 없이 하천구역내 토석, 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댐등 설치자가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행위 등
163	학교보건법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대기환경법」, 「악취방지법」 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16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의 수변구역에서 무허가 폐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6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록 없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행위,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 유지하면서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
166	항공법	비행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
167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하는 행위 등
168	항로표지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거나 항로표지를 훼손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169	항만법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항만 시설을 훼손하여 항만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선박의 입항·출항에 위해(危害)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
170	항만운송사업법	등록 없이 항만운송사업을 하거나 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른 운임 및 요금을 받는 행위 등
17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해양생태계에 유입시키거나 서식지 및 개체 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는 행위, 해양생물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보호구역에서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동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반입하는 행위 등
17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허가 없이 먹는 해양심층수를 제조하는 행위, 해양심층수가 아닌 바닷물·지하염수 또는 지하해수 등을 해양심층수로 표시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인해 해양환경 또는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취수중단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73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대기오염방지설비를 미설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행위,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디젤기관을 작동하는 행위,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행위, 품질 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하는 행위,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
174	혈액관리법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없이 혈액관리 업무를 하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헌혈자의 신원 확인·건강진단, 채혈금지 대상 여부·과거 헌혈경력 및 그 검사결과 조회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채혈을 하는 행위, 감염병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부터 채혈하는 행위, 채혈금지대상자·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채혈하는 행위 등
175	화장품법	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변패한 물질 또는 병원미생물 오염 물질 등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
176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수원 오염을 초래하여 공중의 식수 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177	환경보건법	환경 위해기술을 적용하거나 환경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17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를 위한 측정기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 없이 측정기기를 제작·수입하는 행위 등
179	환경영향평가법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대행 업무를 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는 행위, 다른 평가서등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거짓으로 평가서등을 작성하는 행위 등
18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하는 행위, 에이즈 감염인을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도록 하는 행위 등

1. 공익신고 및 불이익조치의 정의

Q 공익침해행위와 공익신고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A.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련 법률의 벌칙 등 제재를 가져오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라고 합니다. 공익신고란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들에서 벌칙이나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인·허가의 취소 및 영업·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위반행위가 바로 공익침해행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서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 및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점검 미실시 사실을 제보하는 것이 바로 공익신고가 됩니다.

Q 기업의 비밀을 신고하는 경우도 공익신고에 해당하나요?

A. 기업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안전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 공익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는 취업규칙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 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Q 부정목적 신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부정목적 신고로는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승진 등 근로관계상 특혜를 위해 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목적 신고는 정황만으로 판단해선 안 되며, 금품요구 증거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 등 개별사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사업자와의 협상을 위해 신고를 한다든지,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목적 신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Q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불이익조치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불이익조치에는 공식적이고 정형적인 불이익과 비공식적 불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파면·해고와 같이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② 징계·정직·감봉·전근·직무 미부여·직무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③ 성과평가·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의 차별 지급 ④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⑤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⑥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또는 그 결과의 공개 ⑦ 인·허가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⑧ 물품계약·용역계약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2. 공익신고의 제출·접수

Q 공익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 ① 국민권익위원회 ②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의 대표자·사용자 ③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④ 수사기관 ⑤ 국회의원 ⑥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A.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①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②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③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④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고서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공익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Q 익명의 신고도 가능한가요?

- A.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서와 같은 무분별한 익명의 신고는 이해관계인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신용과 프라이버시 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받는 접수기관은 신고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익명의 신고를 접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자체 규정에 따라 접수되는 익명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A.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기명의 신고를 전제로 처리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익명신고는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공익침해 관련 충분한 조사 등이 어려워 실명신고와 같은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보상 및 구조 등의 처리도 어려울 것입니다. 자체 규정에 따라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경우, 꼭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여 신고자가 신고방법에 따른 처리 절차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꼭 신고서 양식에 따라 신고해야만 공익신고라고 할 수 있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예규에서 신고서 서식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고 있지만, 타 신고기관의 경우 이미 접수하고 있는 형식대로 공익침해행위 관련 신고·민원·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구술신고를 제외한 전화문의·상담은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이미 접수하고 있는 형식대로 공익신고를 받더라도,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신분공개 여부에 동의하는지를 꼭 확인·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Q 기업도 공익신고를 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나요?

A.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근로자나 소비자가 오·폐수 무단방류와 같이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는 공익침해행위를 사용자나 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1인 이상의 기업이면 모두 적용되며, 기존에 신고시스템을 갖추었던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Q 기업이 공익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기업에서 공익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치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교육컨설팅 요청, 법률해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기업이 판단하는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사항을 기업으로부터 송부받은 기관들이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업에 통지하게 됩니다.

Q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접수 단계에서 판단하기에 공익침해행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일반민원을 제외한 모든 신고·민원 등에 대해 공익신고 처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신고방법을 준수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적시해 두어야 합니다.

Q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기업이 반드시 공익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나요?

A.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확산방지라는 법의 도입 취지를 근거로 기업이 준법 경영을 공식화하고 기존 시스템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공익신고처리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내부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준법 경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공익신고시스템의 주요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 향후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업무매뉴얼’에서 공익신고시스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내용이 전달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① 공익신고 처리를 위한 상담과 신고접수 시스템 구축 ②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③ 공익침해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와 재발방지책의 강구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Q 이미 내부 윤리규정이 있고, 이에 따른 신고 시스템이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규정이나 시스템을 변경하여야 하나요?

A.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가이드’는 법 시행에 따라 각 기업·기관의 자율통제시스템이 보다 완비되어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신고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기관의 경우 공익침해 관련 법규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윤리위반 행위까지 포함하여 신고를 받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기업의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가이드를 참고하되, 공익침해 관련 피해 방지라는 관점에서 공익침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의 내용을 내부 규정이나 시스템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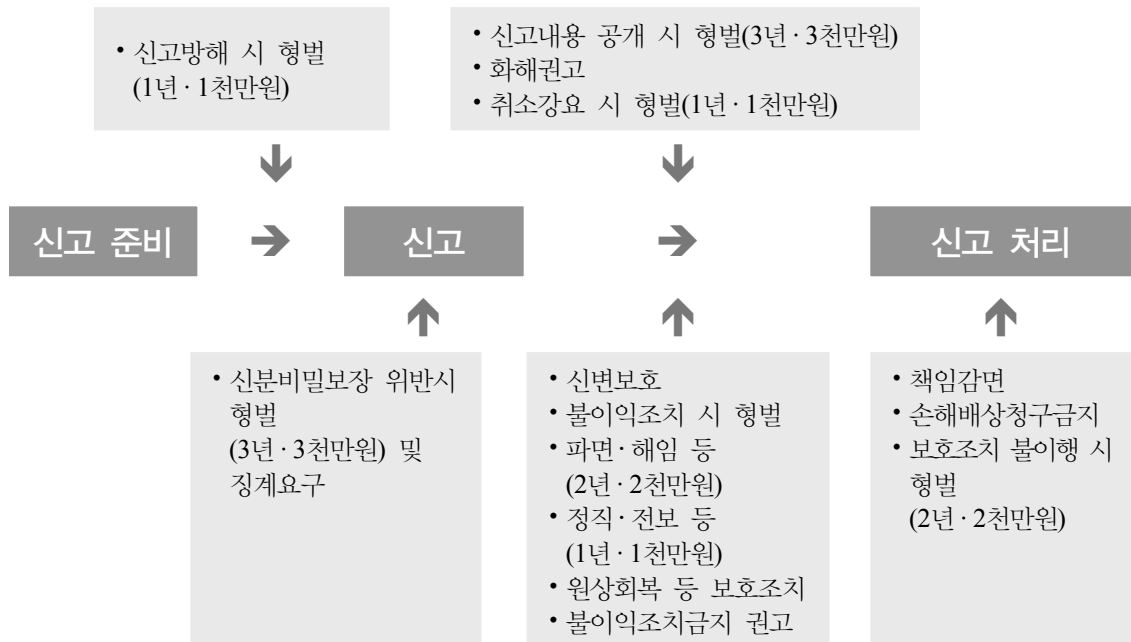
3.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Q 보호조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공익신고자나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신청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Q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받나요?

- A. 주요 보호조치로는 ①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의 비밀보장 ② 공익신고 또는 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 ③ 공익신고 또는 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때 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차별·체불된 보수의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조치 ④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 금지 등이 있습니다.



Q 보호조치 신청과 동시에 다른 행정적 구제 절차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다른 법령에 행정적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먼저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먼저 신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구제 청구와는 달리 해고무효확인소송 등과 같이 법원을 통한 소송의 제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보호조치 신청이나 결정 등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의 제기 후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보호조치 신청이 공익신고자등의 구제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공익신고자나 협조자의 인적사항 외의 신고내용은 공개해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신고자의 비밀을 노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신고 동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A.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그리고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 및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나 금품요구 등 부정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자 비로소 신고한 사람까지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Q 본인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비밀보장, 신분보호, 원상회복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 및 협조자를 징계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례별로 위법행위의 중대성 및 동기나 경위, 신고 외의 징계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의 감경이나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공익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익신고나 보호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협조하다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도 보호대상이 되나요?

A. 공익신고에 대한 사실 여부 파악과 원활한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나 보호와 관련된 조사나 소송에서 동료 직원 등이 공익침해행위 또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증언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협조자도 신고자에 준해 신분보장이나 신분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시 처벌받게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금지되나요?

A.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신고자 색출, 외부 압력에 따라 감사팀에서 신고내용을 누출하는 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사항을 업무담당자 외에 다른 사람도 접근·공유하는 행위 등이 처벌받게 됩니다.

Q 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도 신고를 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불이익조치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근로자와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로 이유로 파견근로자의 교체나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거절이 이루어졌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익신고로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제한이 있나요?

A. 공익신고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보상금 및 구조금

Q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공익신고로 인하여 ① 벌칙 또는 통고처분 ② 몰수 또는 추징금 ③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④ 과징금 ⑤ 국세 또는 지방세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 ⑦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왔거나 이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어 대법원 확정판결 등 처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보상금의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 A. 보상금 지급액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보상대상가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0억이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금 산정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Q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나요?

- A.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시 ①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②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③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④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⑤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Q 기업에서 접수하였으나 부당하게 처리되어 타 신고기관에 공익신고를 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신고방법·절차에 따라 기업이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금·과징금·과태료 등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왔거나 이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어 처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Q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및 그 협조로 인하여 ①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②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③ 원상회복 관련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④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 ⑤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3 신고자 보호 위험도 자가진단

다음의 각 질문에 대하여 동의하시면 “예” 동의하지 않으시면 “아니오”를 체크하세요. 우리 기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Q. 우리 기관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 아니오()

Q. 우리 기관은 신고자 보호의 방법으로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비밀보장에 그치지 않고 신분보호, 불이익으로부터의 원상회복, 책임감면, 승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 아니오()

Q. 직원 대부분은 신고·민원 처리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규와 준수사항,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다.

예() 아니오()

Q. 우리 기관은 신고·민원 접수 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항상 확인하고 있다.

예() 아니오()

Q. 사건 담당자와 부서장을 제외하고는 전산 담당자 등 어느 누구도 개별 신고·민원 건을 절대 열람·확인할 수 없다.

예() 아니오()

Q. 우리 기관에서는 직원이 신고자 신분 노출 등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무조건징계를 받는다.

예() 아니오()

Q. 직원 대부분은 우리 기관 감사담당 부서에 대해 매우 신뢰하고 있으며 감사담당 부서는 강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예() 아니오()

Q. 우리 기관은 신고자 보호·보상과 관련하여 직장 교육을 받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예() 아니오()

Q. 우리 기관에서는 신고자 보호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갖도록 독려하는 등 기관장의 관심이 높다.

예() 아니오()

Q. 직원 대부분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건강·안전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예() 아니오()

진단 결과

■ “아니오” 7개 이상 : 매우 위험

조직 차원의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민원·신고를 처리하는 많은 직원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신고자 보호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아니오” 4~6개 : 대체로 위험

감사담당 부서와 공익침해행위 관련 신고·민원을 처리하는 주요 부서에서 신고자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한 자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아니오” 2~3개 : 대체로 안전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항과 관련해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아니오” 1개 이하 : 매우 안전

자만은 금물이다. 아주 작은 실수로도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이 발생할 수 있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기관의 신뢰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청렴^한 세상

공정한 사회 · 청렴한 세상

별첨 1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공익신고자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정 2011. 3. 29. 법률 제10472호] (시행 2011. 9. 30.)</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제정 2011. 9. 30. 대통령령 제23198호] (시행 2011. 9. 30.)</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p> <p>제3조(행정처분의 범위)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 등을 취소·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2. 영업업무·효력·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법	시 행 령
<p>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p>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p> <p>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p> <p>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p> <p>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p> <p>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p> <p>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p> <p>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p> <p>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p> <p>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p> <p>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p> <p>야.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p> <p>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p>	

법	시행령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p>	<p>제4조(정책 수립·시행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행정기관, 단체, 기업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공익신고</p> <p>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공익신고</p> <p>제5조(공익신고 기관 등)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회의원

법	시행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국회의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제6조(대표자 등의 공익신고 처리 등)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 또는 사용자(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p>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p>	

법	시행령
<p>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p> <p>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조사</p>	<p>제7조(공익신고 내용의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신고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공익신고 내용과 공익침해행위의 관계 4.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 5.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법	시행령
<p>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p> <p>6. 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법 제6조 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p> <p>7.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p> <p>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등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p> <p>제8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기관등에 이첩(移牒)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9조(공익신고의 이첩) ① 위원회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기관 2.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p>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p>

법	시행령
	<p>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과 관련 기관은 공익신고가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은 제외한다.</p> <p>제10조(공공기관 송부)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로 받은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이 공익 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사항을 공공기관에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받은 공공기관은 신고사항이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기관등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것으로 보고, 공익침해행위를 처리하여야 한다.</p> <p>제11조(조사기관등의 처리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등은 그 공익신고를 다른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조사기관등에 다시 이첩할 수 있다.</p> <p>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법	시행령
<p>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p>③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p>④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으로 이첩한 신고내용의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2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 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법	시행령
<p>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않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p> <p>⑥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p> <p>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p> <p>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p> <p>제13조(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 대표자등, 위원회, 조사기관등 및 국회의원등은 공익신고의 접수·이첩·송부·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법	시행령
<p>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4조(신변보호조치)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는 요구자와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요구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신변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해제 사실 및 신변보호조치 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요구자와 보호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법	시행령
<p>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p> <p>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p> <p>④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p> <p>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p> <p>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p>	<p>제15조(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 ①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p>

법	시행령
<p>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p> <p>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 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조치 신청 사실을 통보 받은 조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신고자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p>제16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권고(이하 “보호조치결정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등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등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轉職) 등 보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공익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p>

법	시행령
<p>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p> <p>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p>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疏明)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⑤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기관은 위원회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p> <p>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p>	<p>사실을 보호조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7조(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의 보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p>

법	시행령
<p>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위원회는 조사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18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③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p>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법	시행령
<p>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p> <p>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p>	<p>제18조(불이익조치 금지) ①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 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한 경우에는 그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권고 사실을 불이익 조치 금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9조(조치결과 등의 통보) 위원회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를 받은 자는 요구·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 또는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을 후 2년 이내에 공익 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법	시행령
<p>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p> <p>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p> <p>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참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p>	
<p>제25조(협조 등의 요청) ① 제6조에 따라 공익 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20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2. 출석 및 의견 진술 3. 소속 직원의 파견·공동조사 및 자문 4. 공익신고자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5. 법률 상담·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6.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7.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시 행 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상금 및 구조금</p> <p>제26조(보상금) ①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처분 등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익 신고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 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상금 및 구조금</p> <p>제21조(보상금 지급 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판결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2.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p>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p>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23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p>

법	시행령
<p>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p>	<p>결정하고,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正本)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결정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아직 시작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p> <p>제24조(보상신청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① 하나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공익신고를 한 경우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공익신고로 본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각각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2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 신고자별로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p> <p>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보상금은 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p>

법	시행령
<p>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 아목 및 자목 제외)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p>	<p>제26조(구조금 산정 기준)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입료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p>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p> <p>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p> <p>제27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구조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보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p>

법	시행령
<p>제28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p> <p>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p> <p>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p> <p>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p>	<p>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보상금·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이 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p>
<p>제29조(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법	시행령
<p>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벌칙</p> <p>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법	시행령
<p>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p> <p>제31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공익신고, 신고 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에 관한 사무 <p>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법	시 행 령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74호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별표의 제144호는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p>

五 五

[법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농산물품질관리법」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식품위생법」
4. 「자연환경보전법」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6. 「폐기물관리법」
7. 「혈액관리법」
8. 「의료법」
9. 「소비자기본법」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시행령 별표 1]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 관련)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가축전염병예방법」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개항질서법」
6. 「건강검진기본법」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8. 「건설기계관리법」
9. 「건설기술관리법」
10. 「건설산업기본법」
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 「건축사법」
13. 「검역법」
14. 「경비업법」
15. 「계량에 관한 법률」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7. 「골재채취법」
18. 「공연법」
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1. 「관광진흥법」
22. 「광산보안법」
2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24. 「교통안전법」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6. 「국가기술자격법」
27. 「국민건강증진법」
2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30. 「궤도운송법」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4. 「낙시어선업법」
35. 「내수면어업법」
3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3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38. 「농약관리법」
39. 「농어촌도로 정비법」
40. 「농어촌정비법」
41. 「농지법」
4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4. 「대기환경보전법」
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4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8. 「도로교통법」
49. 「도시가스사업법」
50. 「도시철도법」
5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5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53. 「말산업 육성법」
54. 「먹는물관리법」
5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6. 「문화재보호법」
5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5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9.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6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6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62. 「보험업법」
6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64. 「비료관리법」
65.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66. 「사료관리법」
67. 「산림보호법」
6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9. 「산업안전보건법」
70. 「산업표준화법」
71. 「산지관리법」
72. 「상호저축은행법」
73. 「새마을금고법」
74. 「석면안전관리법」
7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76. 「선박안전법」
7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78.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79. 「소방시설공사업법」
8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1. 「소하천정비법」
82. 「송유관 안전관리법」
83. 「수도법」
84.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85. 「수산물품질관리법」

86. 「수산업법」
87. 「수산자원관리법」
88. 「수상레저안전법」
8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90. 「습지보전법」
9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92. 「식물방역법」
93. 「식품산업진흥법」
94. 「식품안전기본법」
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96. 「야생동·식물보호법」
97. 「약사법」
98. 「양곡관리법」
9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0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01. 「어장관리법」
102. 「어촌·어항법」
10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04. 「여신전문금융업법」
10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06. 「염관리법」
10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8. 「영유아보육법」
109.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110. 「원자력법」
1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1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1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1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6. 「의료기기법」
1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18. 「인삼산업법」
1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120. 「자격기본법」
121. 「자연공원법」
122. 「자연재해대책법」
12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12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125.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26. 「전기공사업법」
127. 「전기사업법」
128.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12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30. 「전력기술관리법」
1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3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3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35. 「제품안전기본법」
136. 「종자산업법」
137. 「지진재해대책법」
138. 「지하수법」
139. 「직업안정법」
140. 「집단에너지사업법」
141. 「철도안전법」
142. 「청소년보호법」
143. 「청소년활동진흥법」
14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45. 「초지법」

146. 「축산물위생관리법」
14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48. 「친환경농업육성법」
149. 「토양환경보전법」
15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51. 「하수도법」
152. 「하천법」
153. 「학교보건법」
1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5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56. 「항공법」
157.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158. 「항로표지법」
159. 「항만법」
160. 「항만운송사업법」
16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3. 「해양환경관리법」
164. 「화장품법」
165.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6. 「환경보건법」
16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68. 「환경영향평가법」
16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법 제26조제1항 및 이 영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법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			
1) 불이익조치를 한 자		500	1,000	2,000
2) 참고인		200	400	800
3) 신청인		100	200	300
나.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이 법 제19조제2항(법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	400	700	1,000

별첨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 발췌)

<p style="text-align: center;">법 률 [법률 제9139호, 2008.12.19]</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규칙 [법무부령 제731호, 2011.1.18]</p>
<p>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p> <p>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 기타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사법경찰관이 조서등에 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p>	<p>제4조(신원관리카드의 기재사항)</p> <p>①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는 범죄신고자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과 보좌인, 변호인,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 및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등을 기재한다.</p> <p>②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이 조서등에 가명으로 서명한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에 기재한 가명을 신원관리카드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본명과 가명의 서명을 신원관리카드에 기재하고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p>	<p>제5조(보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 인적 사항 미기재사유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p> <p>제6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의 작성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p> <p>제25조(서식 등의 관리 등)</p> <p>①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그 작성기관의 장이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한 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p>⑤범죄신고자등은 진술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⑥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⑦신원관리카드는 검사가 관리한다.</p> <p>⑧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p> <p>①법원은 다른 사건의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외에는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0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허가신청 등) ①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p> <p>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1조(면담신청)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p>

법 른	시행령	시행규칙
<p>1.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p> <p>2.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p> <p>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등 공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p> <p>③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범죄신고자등과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면담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즉시 그 사실을 범죄신고자등에게 통지하고, 범죄신고자등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검사실등 적당한 장소에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대리인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p> <p>⑤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신청한 변호인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담신청을 한 자는 검사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⑥제5항의 이의신청은 그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p>		<p>제2조(면담신청사실 통지)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신청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p> <p>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외에 전화·팩스 등을 이용하여 면담신청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3조(이의신청 방법)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p> <p>②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p>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허가하거나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대리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제10조(영상물촬영) ①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또는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판사는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과정을 비디오테이프등 영상물로 촬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의 촬영비용 및 복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범죄신고자등의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p> <p>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の特례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소환할때에는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한다. ②재판장 또는 판사는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p>	<p>제5조(신원관리카드의 관리) ①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관할 검찰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은</p>	<p>제14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 법 제1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출석한 공판정에서는 검사에게 구두로 이를 요청할 수 있다.</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p>우에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로 하여금 공판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증인의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증인선서·증언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의하여 소환된 증인의 신원확인은 검사가 제시하는 신원관리카드에 의한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조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범죄 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선서서에 가명으로 서명·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⑤증인으로 소환받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정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p>	<p>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p> <p>③신원관리카드는 공소제기후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가 이를 관리한다.</p> <p>④법 제1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신원확인을 하는 때에는 검사·공판정에서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직접 신원관리카드를 제시하고, 재판장 또는 판사는 지체없이 담당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신원관리카드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p>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p>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⑥재판장 또는 판사는 직권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의 장소에서 증인신문등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p> <p>⑦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297조(피고인 등의 퇴정)제2항의 규정은 제6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① 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및 변호인과 당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소송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p> <p>③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10조(집중심리) 및 제13조(판결선고)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인쇄 2012년 1월 일
발행 2012년 1월 일

편집 및 발행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www.acrc.go.kr 전화 : 02) 360-3768~70
인쇄 : 현대정보기획 02) 2266-5011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교육의 의뢰나 자료에 관한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